

第302回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7 號
(臨時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11年8月18日(木)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議員會館 101號)

議事日程

-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審査된案件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 1
-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

(14시23분 개의)

○위원장 이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어서 각자 소속된 상임위원회 일정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 중 몇 분의 사·보임이 있었으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8일자로 민주당의 노영민 위원, 7월 4일자로 민주당의 전현희 위원, 8월 11일자로 비교섭단체의 권영길 위원이 각각 사임하시고, 7월 4일자로 민주당의 전현희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사임하신 위원은 7월 4일자로 민주당의 박선숙 위원님, 8월 11일자로 비교섭단체의 권영길 위원이 각각 사임하시고, 7월 4일자로 민주당의 전현희 위원, 8월 11일자로 비교섭단체의 김선동 위원, 8월 17일자로 민주당의 이윤석 위원이 각각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을 비

롯해서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정치개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동 위원님은 아직 안 오셨고요.

다음은 지난 8월 5일자 국회사무처 인사에 의하여 우리 특별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위원 및 직원의 이동이 있었으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강주 전문위원입니다.

박출해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오늘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

(14시26분)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 위원회의 김정훈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의 김정훈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정훈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장 김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6일 및 17일 총 2차에 걸쳐서 현재 소위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 의견 중 재외선거 관련 사항을 심사한 결과 다음 내용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구 국회의 원선거와 지방선거의 경우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재외국민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불법적 복수국적 여부의 확인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권 원본과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재외선거 투표시간을 2시간 앞당겨 오전 8시부터 투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 편의를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공관에 파견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되,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조사와 관련하여 공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김정훈 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환 위원 성윤환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성윤환 위원 이 15조1항2호와 관련해서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우선 거소신고만 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답변할 수 있지요?

○위원장 이경재 사무총장님, 답변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출입국관리법에서는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거소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소신고를 하고 나면 주민등록의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저희들은 3개월 이상 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소신고를 악용해서 달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성윤환 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에 살다가 3개월 전에 와서 거소신고를 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 외국 나갔다가 선거 날 들어와서 투표하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건 계속해서 거주한 거는 아니죠.

○성윤환 위원 거주한 거라는 말이 없거든요. 여기 보면 ‘3개월 이상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안 사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거소신고기간은 3개월이 넘었지만 실제로 이제 중간에 외국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거소 일이 3개월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는 점에 관해서 이거 어느 하나의 특정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고 되고 3개월이 넘으면 모두 투표권을 주든지, 아니면 신고 되고 3개월 이상 실거주 했을 때 투표권을 주는 걸로 하든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문제지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으면 사실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 좀 자구 수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의결해야 될 건 실제로 3개월 이상 신고가 되어 있고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3개월 이상 신고가 되어 있으면 투표권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야 될 것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선거실장이 조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성윤환 위원** 이 법 문장의 표현에 의하면 실 거주기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도 그 문제가 같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느냐 하는 문제는 따지지 않고 명부에 등재돼서 3개월 이상 된 경우에는 다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선거일 날에는 국내에서만 그런 사람 경우에 투표가 가능하고 국외에 있을 때에는 지역구 선거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윤환 위원** 그러면 일단 3개월 이상 거주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 투표권을 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는 저희가 다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윤환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법 문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관할 구역 안’, 그러면 각 국회의원지역구, 어느 특정 지역구 안에 3개월 이상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계속하여’는 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그러니까 등재만 되어 있으면, 또 등재가 만약에 그 안에 변동이 있으면 모르지만……

○**성윤환 위원** 변동이 되면 안 되지요. A지역구에서 B지역구로 3개월 안에 움직이면 그 사람은 투표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성윤환 위원** 그러니까 특정 선거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됐다면 선거권이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성윤환 위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요.

그다음에 ‘3개월 이상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계속하여’를 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예, 그런데 일단 등재가 되고 나면 우리 기준일까지는 3개월은 채워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윤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하여’라는 표현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는 그 기준 일까지는 어쨌든 계속해서 등재가 되어 있을 것은 필요로 하니까……

○**성윤환 위원** 등재는, 이미 신고가 되면 3개월 중간에 또 지워졌다 다시 올라갔다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상정을 해서 계속해서 등재가 되어 있을 것을, ‘계속하여’가 들어가는 게 정확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성윤환 위원** 글썄, 이게 굳이 ‘계속하여’란 말이 필요한가?

○**위원장 이경재**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거주한다 그럴 때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신고는 일단 하면 ‘계속’이라는 표현이 필요 없이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중간에 어떤 행동이 이루어져서 취소가 됐다든가 떠나면 그 신고 자체가 무효로 되는 거니까 ‘계속하여’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성윤환 위원** 이런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1년 전에 한 달 동안 거주신고가 되어 있다가 이번에 와서 두 달 거주신고 된 것도 3개월로 쳐주자, 이걸 안 된다, 그런 뜻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런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성윤환 위원** 아니, 3개월 이상 거주하고자 할 때 거주신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맞습니다. 그런 뜻인데, 왜냐하면 거주신고를 악용해 가지고 선거구를 달리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윤환 위원** 그건 안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계속하여 3개월’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기춘 위원** 그 지역에 계속해서 3개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성윤환 위원** 아니, 앞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지역구 관할 구역’으로 전제가 돼 있습니다. 관할 구역이 중간에 바뀌게 되면 이걸 3개월 이상 안 되는 거고, 전제가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라는 말이 굳이 필

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그런데 이제 만약에 ‘계속’을 빼게 되면요 그 전에, 3개월보다 훨씬 전에, 4개월 전에 등재신고를 해 놓고 또 중간에 빠졌다가 또다시 들어오고, 이게 전체 합산해서 3개월 이상,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성윤환 위원** 합산 3개월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건 해석상 합산할 수가 없는……

○**김선동 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하여’를 넣으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경재** 그런데 우리 어법상으로는 행동은 한 번 신고하는 것만으로, 신고만 해 놓으면 그 자체가 신고된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속하여’라는 표현이 맞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다른 데로 또 옮겨 가지고 선거를 할 우려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쪽에 등재가 3개월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이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원래 이제 우리 처음 안에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는 한 번 하는 거지 계속해서 이렇게 신고가 돼 있느냐, 그것은 적절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자구 수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예, ‘3개월 이상 신고인명부에 등재돼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고칠 건데요. 고쳐서 지금……

○**김정훈 위원** 그 문구 다시 한번 읽어 봐요, 정정한 부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국회의원지역구의 관할 구역 안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고쳐질 거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리하면 되겠네.

○**성윤환 위원** 그러면 되겠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예.

○**위원장 이경재** 아, 그다음에 잠깐요.

꼭 그러지 아니하고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해외에 계

신 분들은 해외동포로서 지역구는 안 되지만 대통령은, 비례대표는 가능한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다만, 투표하려면 들어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위원장 이경재** 아, 부재자 투표는 할 수 없다, 그런 뜻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그러니까 그것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예, 법문은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박기춘 위원** 잠깐만……

○**위원장 이경재** 박기춘 위원님!

○**박기춘 위원** 지금 3개월간 계속해서 거소하는 자에게만 투표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 취지는 원래 법에는 19일 전에 우리가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거나 또 거소신고를 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그걸 연장해서 기간을 늘려 가지고 3개월로 바꾼 것이거든요. 개정의 취지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구에 집단적으로 가서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둔 건데, 그러면 3개월 전에 집단적으로 특정한 지역구에 가서 거소신고만 하면 다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19일 전에 하던 것은 안 되는 건데 3개월 전에만 하면 되는 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계속해서 거주, 그 지역에 거주하여야 된다, 뭐 이렇게 강제하지 않는 한 이게 내가 볼 때는 20일 전에 하면 되는 것을 3개월 전에 하는 것으로 좀 다소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 개정의 취지에 맞는 건지 그것도 저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이제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선거가 임박해 가지고 국내거소신고의 제도를 악용해서 그런 현상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원우 의원님께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그런 부분 있었고, 저희들은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건 저희들은, 3개월이라는 지정은 출입국관리법에도 3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에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취지를 살려서 최소한 지역구에서는 지역 귀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을 담았습니다.

○박기춘 위원 아니, 글썄 그 개정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쉬운 걸 복잡하게 말씀하시는데……

주민등록을 선거 전 20일 전에, 19일 전에 옮기면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3개월 전으로 바꾸는 것밖에 다른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19일 전에 하면 되는 것을 3개월 전에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개정의 취지에 맞느냐 하는 것에 나는 좀 의의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많은 위원들이 거기에 동의한다면 저는 뭐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마는 그게 19일하고 3개월하고의 무슨 차이가 그렇게 크게 있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래도 최소한……

○박기춘 위원 3개월 거주한다 그런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 3개월을 거소신고만 하면 미국에 가 있든, 미국에 가서 있어도 투표권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19일 전에 와서 신고하면 되는 걸 그건 너무 임박해서 특정 지역에 집단적으로 가서 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해 가지고 개정의 취지에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걸 3개월로 바꿔놨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3개월 전에 하면 되는 거지.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뭐 3개월 전에 하면 어떻게 19일 전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왕 그런 개정의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3개월간 거주한 자에 한한다.” 이게 맞는 거지, “거소신고를 한 후 3개월간 그 지역구에 거주한 자에 한하여 투표권을 줄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지. 거소신고 해 놓고 대리신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3개월 전에? 그리고 계속해서 외국에 사는데 투표하는 날만 투표하러 오면 19일 전에 하든 3개월 전에 하든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예요, 내가 말씀드리려는 개정의 취지의 의미는.

○위원장 이경재 박준선 위원님!

○朴俊宣 委員 총장님께 제가 우리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재외국민들께서 거소신고를 할 때는 거주지를 같이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朴俊宣 委員 그래서 이 거소신고라는 것은 거주 개념을 전제로 해서 거소신고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원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6개월 안과 그다음에 그것을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검토를 해서, 이것이 6개월 정도로 제한을 하느냐 아니면 5개월, 4개월, 3개월, 아니면 아예 그런 제한을 하지 않느냐……

맨 처음에 본 위원은 이 3개월 안도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투표권과 관련된 이런 국민의 기본권은 거주요건이 아닌 재외국민의 본래의 권한입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 선거권을 주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3개월 거소신고 요건을 뒤서 제한하는 것은 이 헌법상의 기본적인 국민의 기본권, 재외국민도 국민인데 그런 선거권을 우리가 제한하는 겁니다.

지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朴俊宣 委員 그런 것처럼 합리적인 제한인 경우에는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개월이나 1년이나 그 제한의 정도는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이유를 따져서 제한을 하되, 다만 그 제한의 강도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상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6개월보다는 그 제한의 강도가 낮은 3개월로 낮추자 그리고 백원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선거에 임박하여’, 그 임박하여라는 것이 바로 19일 전 또는 한 달 전에 이렇게 해 가지고 특정 지역구에 대거 거소신고를 함으로 해서 특정 선거를 왜곡할 수 있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지하자 이래서 3개월 요건으로써 타협적으로 소위에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성곤 위원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하나만요. 지금 거소신고를 본인이 안 하고 대리로 할 수 있습니까? 거소신고를 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안 되는 것으로……

○김성곤 위원 본인이 직접 해야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박기춘 위원 명확하게 답변해 봐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리고 나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재외선거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기획관 정훈교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국장입니다.

거소신고는 지금 본인이 입국을 할 때 거기서, 출입국관리소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김성곤 위원 직접 하는 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기획관 정훈교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최규성 위원 저도 질문……

○김성곤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역 국회의 원 선거에 투표할 수 없도록 어저께 합의를 했는데 그것은 여기 신·구문 대비표에 보이지가 않는데 어디 있지요, 그게? 개정안이 신·구문 대비표에 들어 있어야 될 텐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기획관 정훈교 그 앞에 아마 선거권, 앞에 선거권에서 규정을 전체적으로, 15조2항2호에서 선거권 자격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마……

○김성곤 위원 아, 15조2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기획관 정훈교 예, 그렇습니다.

○최규성 위원 거소는 거주를 전제로 한 거소신고가 아닙니까?

누가 답변해요? 예, 총장님.

거소신고는 거소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주를 전제로 한, 며칠이라도 거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거주를 전제로 해 가지고 신고……

○최규성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거주를 전제로 신고하는 것이 거소신고이지요.

○최규성 위원 그러면 그 사실 확인은 전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확인할 방법이……

○최규성 위원 왜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지금 이 부분에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최규성 위원 예를 들면 우리 국내에서도 주민 등록만 옮겨 놓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투표하면 그것 다 문제 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제 삼지요? 그런데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어느 특정 지역을 겨냥해서 대거 거소신고 하고 당일 날 들어와서 투표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거소신고를 하면 전부를 다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거소의 의무를 같이 부과를 해야 거기서 잘못된 부분들을 색출하고 범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지요. 그 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소신고는 단순히 신고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소의 의무가 함께 부과 되고, 사실상 그것을 조사하기가 다 조사하기는 어렵지만 몇몇 조사를 해서 형사처벌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국내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거소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최규성 위원 거소의 의무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지요, 거주 의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소가 부여가 되지만 이게 거주 여부를 상당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담당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규성 위원 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악이 어려운 부분은 행정적인 것이고, 거주 의무를 부과해서 문제가 된 사람은 형사처벌 하겠다 그래서 그런 범법의 우려가 있는 것은 못 하게 해야 맞는 거지. 당연히 범법

우려가 있는데, 이게……

답변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기획관 정훈교**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법상의 주소가 주소지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자기가 거소를 정하는 것인데 주민등록과 같이 거소를…… 지금 현재 주민등록도 본인이 정해 놓고 계속해서 거기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30일 이상 거주할 때는 옮겨야 되고, 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소도 국내 들어와서 거소를 정해 놓고 거기에 가서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소의 개념이 그렇게 반드시 정주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정해 놓고 나갔다 왔다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주소신고 제도를 선거법에서 받을 그런 이유가 처음부터 없는 그런 문제와 이게 연결이 됩니다.

○**최규성 위원** 예를 들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거소라 하면 적어도 그 집을 소유하거나 임대를 했거나 친척집이거나 뭐 연고가 있어야, 그런 부분들이 다 구체적인 것이 있어서 실제로 거기에 거주를 한다는 부분이 한 달 내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이라든지 이렇게 상당성이 입증되어야 되는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기획관 정훈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규성 위원** 그럴 의사가 없이 단순히 주소신고만 해 가지고 투표행위를 한 자는 범법자로서 처벌을 하는 조항을 넣어야……

예를 들면 해외에서 이렇습니다. 내 지역이 이번에 선거가 아주 긴박하니까 여러분 좀 도와줘서 몇백 명 동원해 가지고 허위 신고하고 와서 그러고 나서 선거 날 우르르 와서 투표하고 이런 일 벌어지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허점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거주의 부분을 일단 명기를 하고 실제 조사해서 하나 안 하나는 행정력에 따라 하는 것이고, 범법자도 한두 명이라도 엄벌에 처하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기획관 정훈교** 국내주소신고 제도가 이제 재외국민의 보호 차원에서 들어왔고요 또 거의 주민등록자와 같은 그런 권리·권한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선거법에서 이 국내주소신고 제도를 받은 겁니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염려가 된다면 이 국내주소신고 제도는 처음부터 선거법에 연계시켜서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소신고 제도를 반드시 정주 사실을 확인해서 처벌하는 그런 관련 규정도 현재는 없고요.

주민등록 또한……

○**최규성 위원** 주민등록도 임의로 옮겨 가지고 살지 않으면서 선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기획관 정훈교** 그때는 물론 이제……

○**최규성 위원** 처벌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기획관 정훈교** 그렇습니다.

○**최규성 위원** 거기에 준해서 거주의 그런 상당성 그것을 넣어야 맞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기획관 정훈교** 그래서 최소 기간으로 3개월을 둔 것이고요. 처음부터 이런 제한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개월 최소 기간을 두고, 또 외국에 나가고, 신고만 하고 외국에 나가 살면 그때는 지역 주민의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 배제하자……

○**최규성 위원** 그러면 3개월 중에 한 번이라도 여기에 나가면 안 됩니까? 계속 살아야 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기획관 정훈교** 갔다 오면 괜찮습니다. 갔다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최규성 위원** 그러면 그중에, 3개월 중에 한번만 들락거리면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기획관 정훈교**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나 여행의 자유를 또 제한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성윤환 위원** 제가 말씀이지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국내주소신고를 하고 나서 얼마간 거주하라고 하는 거주요건을 부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신고해 놓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얼마간 거주하라고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 법에 보면 우리 주민등록법하고 달리 반드시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국내

에 체류하면서 국내법에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기획관 정훈교** 그렇습니다.

○**성윤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주요건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기획관 정훈교** 별척도 없습니다.

○**성윤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법에서 3개월 이상 신고가 되어 있고 3개월 이상 거주하라고 그러면 거주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실상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요건을 부여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규성 위원** 아니, 다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그중의 한두 명이라도 조사를 해 가지고 요건에 해당된 자를 엄벌에 처하면 그런 범법행위가 안 벌어진다는 거지요.

○**성윤환 위원**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朴俊宣 委員**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재** 예.

○**朴俊宣 委員** 제가 얘기 좀……

우리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고 그 우려가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외동포의 체류자격과 관련해서 우리 선거법상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거랑 차원이 틀리게 상당히 오랜 시간 논의가 되고 개정되고 해서 정착된 법률입니다. 그중에서 거소와 관련된 체류자격 부여는 사실 재외동포의 어떤 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재외동포법에서 독립적으로 창설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주민등록법상의 어떤 거주라든가 또는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개념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고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쨌든 대한민국의 하나의 장소나 주거적인 지역을 정해서, 아파트라든가 주거지를 하나 정해서 거기를 거소라는 개념으로 신고를 하면 그로 인해서 체류자격을 주고 체류자격 플러스 의료보험 혜택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비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국내 체류하는 기간……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 정개특위에서 지금 재외선거권을 부여하고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부

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거소의 어떤 그런 것을 한 3개월 정도 주자는 그런 제한을 둘 때, 그 거소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재외동포법의 어떤 그런 것을 선관위라든가 또는 어떤 정부기관에서 거소를 실사해 가지고 주거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자, 이 논의는 일단은 일리는 있어도 그 논의는 우리 이 정개특위에서 할 논의가 아니고 어찌 보면 외교통상통일위원회라든가 거기에서 재외동포법의 기본적인 정신과 앞으로의 어떤 개정 방향을 논의할 때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서 거소 개념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는 너무 거대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규성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은 중국·미국·일본, 많은 재외동포들 간에 형평성과 여러 가지 차별성, 이런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법률에 의해서 재외동포만 혜택을 보고 중국 동포는 혜택을 못 보고 고려인 동포는 혜택을 못 보는 등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착된 개념이 거소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선관위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그 거소 개념 행위나 거소 개념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것은 선관위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제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진 위원** 제가 잠깐만 질문 좀……

○**위원장 이경재** 예, 권영진 위원님!

○**권영진 위원** 이게 우문일는지 모르는데요, 이중투표권이 부여되는 것은 방지가 완벽하게 됩니까, 자동으로, 전산처리로 인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그 부분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불법적 복수국적자의 선거 참여 그런 부분을 배제……

○**권영진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외국민 선거권 투표신청은 5개월 전부터입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5개월 된 시점에서 자기가 재외국민 투표권으로 신청을 하고 그리고 3개월 전에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거소인 투표권 신청을 할 경우에 이게 완벽하게 차단이 되느냐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되도록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재외선거 절차적인 부분에서 입법 개선해 준 부

분이 한 사람이 처음 하고 와서 사후 변경이 되어서 뒤에 했을 때 뒤예를 기준해 가지고 명부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입법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완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러면 외국에서 재외국민 투표 등록을 하고 3개월 전에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거소인으로도 투표 신청을,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게 안 되도록 장치가 딱 되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재외선거명부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정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 보완을 하였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국내거소인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지역구까지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비록 재외국민 투표를 신청을 했지만 내가 투표 기간 동안 보니까 외국에 있는 대신 국내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거소인으로 나는 투표를 하겠다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국장, 어떻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국내거소 신고가 된다면…… 영주권자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권영진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런 것 같으면 국내에 있으면 지역구하고, 지역구는 가능합니다.

○권영진 위원 그러면 그 신청을 받아 주는 거예요? 국내거소인 신청을 받고 기왕에 했던 재외국민 투표 신청은 말소를 시켜 주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뒤에, 나중에 한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명부에 등재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입법 개선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전현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현희 위원 지금 재외국민에게 최초로 지역구 투표권을 부여하는 게 이번 법안 주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국내에 거주하는 지역구의 주민들과 그리고 또 재외국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 형평성, 그래서 헌법상의 평등권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지역구 거주 국민의 경우에는

지역구에 거주해서 그 지역구의 주민으로 인정될 경우에 투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외국민의 경우에 단지 거소신고만 하고 그 지역구에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그 지역구의 지역구 의원을 뽑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어떤 개연성이나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의 최소한이 그 지역구에 어느 정도 거주를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입법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거주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선관위의 업무도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 적어도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수단이 출입국관리 기록을 보면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악용하기 위해서 거소신고만 하고 바로 출국을 했다가 투표 당일 즈음해서 와서 투표를 하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여기에 적어도 단서조건으로 국내 출입국 카드를 확인해서 한국에,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일정 정도 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가적인 조건이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윤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성 위원님!

○성윤환 위원 최규성 위원님 말씀이나 전현희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왜 그런가, 거주 요건이 필요한가 하는 점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대통령선거라면 거주 요건이 필요없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실거주가 전체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실거주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실거주 안 한다면 특정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이 외국에 있는 사람, 그 지역과 관계없는 사람 잔뜩 불러들여서 신고를 하게 하고 투표하는 날 들어와서 투표하게 하면 이것은 문제가, 투표가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고, 그러니까 거소신고기간도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지만 실거주 요건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야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개월 이상 거

주요건을, 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3개월 이상 거주하였음을 본인으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 하든지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는 하여튼 너무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좀더 상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경재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또는 공정성 문제까지 겹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소위에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면 그것만 빼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아까 그 부분 빼고요,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통과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거주 요건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시되 지금 해외동포들이, 참정권을 뵈었습니다마는 막상 여러 가지 현행법상 제약이 많기 때문에 좀 투표를 참여할 수 있도록 불편한 상황을 해소해 달라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루빨리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셔서 다음 9월 바로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빨리 통과시켜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수고스럽지만 소위원장께서 이것을 감안하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1항인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김선동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을 하셨는데 인사하시지요.

○金先東 委員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을 대신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서 활동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또 지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감사합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5시05분)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그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사보임 등 이동이 있음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사임위원들이 소속하셨던 소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이 보임을 하시되 일부 위원님의 개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명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 명단은 끝에 실음)

그 밖에 향후 일부 소위원회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소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위원수)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	정당·정치자금 법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김정훈(한)	박기춘(민)
소위원 (18인)	이은재(한)	박준선(한)
	권영진(한)	성윤환(한)
	박준선(한)	안효대(한)
	여상규(한)	주성영(한)
	김성곤(민)	진 영(한)
	백원우(민)	이윤석(민)
	조경태(민)	전현희(민)
	류근찬(비)	최규성(민)
	金先東(비)	김혜성(비)
계	10인	10인

○출석 위원(15인)

권영진 金先東 김성곤 김정훈
 김혜성 박기춘 박준선 성윤환
 안효대 여상규 이경재 전현희
 조경태 진영 최규성

○청가 위원(1인)

류근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전문위원 문강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무총장 이종우
 선거실장 김용희
 재외선거기획관 정훈교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노영민	김유정	민주당	2011. 6. 28
박선숙	전현희	민주당	2011. 7. 4
권영길	金先東	아는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	2011. 8. 11
김유정	이윤석	민주당	2011. 8. 17

○의안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세환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2 장세환·김성곤·문학진·송민순·양승조·유선호·이석현·김상희·최규식·최규성 의원 발의)

6월 23일 회부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4 이석현·서종표·유성엽·김충조·유선호·홍사덕·이성남·이명수·김희철·김춘진·김영진·오제세·김성곤·최규성·김재윤 의원 발의)

6월 27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 발의)

(2011. 7. 13 윤석용·손범규·이낙연·김성수·권영진·유성엽·이한성·신상진·김선동·한선교 의원 발의)

7월 14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

(2011. 7. 19 박기춘·김성곤·이한성·최규성·조배숙·김영진·이윤석·오제세·신낙균·김효석·전현희 의원 발의)

7월 20일 회부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일호 의원 대표 발의)

(2011. 7. 26 유일호·김장수·김금래·안홍준·박대해·원희목·정수성·최경희·권영세·권선택 의원 발의)

7월 27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 발의)

(2011. 7. 27 이정희·최종원·홍희덕·권영길·金先東·곽정숙·강기갑·유원일·김영진·김상희 의원 발의)

7월 28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 발의)

(2011. 7. 29 윤석용·한선교·주승용·이한성·이낙연·윤영·원희목·박은수·유성엽·권영진·신성범 의원 발의)

8월 1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 발의)

(2011. 8. 4 김성곤·유선호·김춘진·조배숙·김효석·강창일·조영택·조정식·오제세·김영진 의원 발의)

8월 5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 발의)

(2011. 8. 10 원혜영·송민순·최규성·박주선·조영택·조정식·추미애·강기정·신낙균·이미경·백재현·김영록·이찬열·박영선·안규백·김영진·최영희 의원 발의)

8월 11일 회부됨